

● 제287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19. 6. 20.

운 영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746

I. 결산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제출일 : 2019. 5. 31.
- 회부일 : 2019. 6. 3.

II. 결산현황

1. 총괄

-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 총괄은
 - 세입예산현액 2,753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232만원이며,
 - 세출예산현액 272억 5,877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4억 4,119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491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8억 267만원임.

2. 세입 결산

- 2018회계연도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2,753만원 보다 4,150만원이 증액된 6,90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6,232만원(90.3%)을 수납하고 671만원(9.7%)이 미수납되어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주요 세입 현황은

-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2,758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증지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및 기타 사업수입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3,475만원으로, 변상금, 위약금, 불용품 매각대, 그 외 수입 및 지난연도 수입임.

3. 세출 결산

- 2018회계연도 당초 세출예산액은 270억 598만원이고, 전년도 이월액 2억 5,280만원이 증액돼 예산현액은 272억 5,877만원임.
- 결산 결과 예산현액의 93.3%인 254억 4,119만원이 집행됐고, 1,491만원(0.1%)은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18억 267만원(6.6%)이 불용되었음.
- 세출에 대한 주요 사업별 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의회운영 강화 및 의회청사시설의 안정적 관리 사업’은 예산현액 147억 3,207만원 중 140억 3,298만원을 집행했음.
 - ‘의정활동의 적극홍보 및 정보화 사업’은 예산현액 84억 8,117만원 중 78억 6,780만원을 집행했음.
 -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사업’은 예산현액 26억 4,278만원 중 22억 3,389만원을 집행했음.

4.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변경사용

가. 예산 이용 : 해당 없음.

나. 예산 전용 :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 지원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시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청사시설개선에 사용됨(2건, 1억 5,480만원).

다. 예산 이체 : 해당 없음.

라. 예산 변경 : 연구용역, 의원 국외여비 및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부족분에 사용됨(3건, 2,164만원).

마. 예비비 지출 : 해당 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액 : 연구용역(1건) 미완료로 인해 1,491만원을 사고이월함.

5. 기금결산 : 해당 없음

6.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7.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18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은 1,004억 6,700만원으로(표-1),

- 토지(3,638㎡, 954억 7,000만원)는 공시지가 상승으로 전년대비 85억 8,800만원 증가했음.
- 건물(14,858㎡, 42억 3,600만원), 그 밖의 기타 재산¹⁾(7억 6,100만원)의 증감분은 없음.

1) 태양광발전시설 및 지적재산권 등

<표-1> 2018회계연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8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91,879	8,588	-	100,467	
행정 재산	계	91,879	8,558	-	100,467
	공공용재산	-	-	-	-
	공용재산	91,879	8,588	-	100,467
	토지(3,638㎡)	86,882*	8,588	-	95,470
	건물(14,858㎡)	4,236	-	-	4,236
	기타	761	-	-	761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	-	-	-
일반재산	-	-	-	-	

*2017년 공시지가 산정 기준일 착오로 인한 토지가액 오류 정정(당초 95,470천원 → 변경 86,882천원)

8. 물품 증가 및 현재액

- 2018년도 말 기준 정수물품은 346개이며, 현재가액은 전년 대비 2억 100만원 (35개)이 증가해 27억 4,400만원임(표-2).

<표-2> 2018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17년도말 보유현황*		당해연도 증감액			2018년도말 보유현황
			구매 등 취득	관리전환 등	소계	
일반 회계	수량	311	35	-	35	346
	금액	2,543	201	-	201	2,744

*2018년 정기재물조사(2018.08.01.~2018.09.30) 결과에 따른 2017년도 말 정수물품 보유 현황 정정(당초 743개, 35억 6,100만원 → 변경 311개, 25억 4,300만원)

Ⅲ.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박노수)

1 세입 결산 검토

1) 총괄 검토

-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753만원으로, 4,150만원이 증액된 6,903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232만원(90.3%)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671만원(9.7%)으로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표-3).

<표-3>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총괄

(단위 : 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수납율
합 계	2,753	6,903	6,232	671	90.3
세외수입	2,753	6,903	6,232	671	90.3
경상적 세외수입	2,631	2,758	2,758	-	100.0
재산임대수입	214	205	205	-	100.0
공유재산임대료	214	205	205	-	100.0
수수료수입	800	891	891	-	100.0
증지수입	-	64	64	-	100.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800	827	827	-	100.0
사업수입	1,617	1,658	1,658	-	100.0
기타사업수입	1,617	1,658	1,658	-	100.0
이자수입	-	4	4	-	100.0
기타이자수입	-	4	4	-	100.0
임시적 세외수입	122	4,145	3,474	671	83.8
과징금및과태료등	122	2,055	1,735	320	84.4
변상금	122	1,540	1,220	320	79.2
위약금	-	515	515	-	100.0
기타수입	-	1,678	1,678	-	100.0
불용품매각대	-	1,227	1,227	-	100.0
그외수입	-	451	451	-	100.0
지난연도수입	-	412	61	351	14.8
지난연도수입	-	412	61	351	14.8

- 경상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총 2,758만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현금인출기) 205만원, 증지수입(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응시수수료) 64만원,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827만원, 기타 사업수입(「서울의회보」 민간광고) 1,658만원 및 기타 이자수입 4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의 수납액은 총 3,474만원으로, 변상금(제9대 시의원 보급 전산기기 미반납) 1,220만원, 위약금(연구용역 지체상금) 515만원, 불용품매입비(중증장애의원 보장구 및 공용차량 매각대금) 1,227만원, 기타 잡수입 451만원, 지난연도 수입 61만원임.
- 최근 3년간 세입결산액 추이를 살펴보면, 2016년과 2017년은 미수납액이 없었으나, 2018년에는 90.3%로 징수실적이 감소했으며, 2017년과 2018년에는 세입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의 차이가 2배 이상 발생하고 있으므로 세입 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표-4).

<표-4> 최근 3년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입결산 추이

(단위 : 만원, %)

구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결손처분	다음연도 이월액	수납율 (B/A)
2018	2,753	6,903	6,232	671	-	671	90.3
2017	2,431	6,497	6,497	-	-	-	100.0
2016	2,489	2,793	2,793	-	-	-	100.0

2) 임시적 세외수입

- 세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라도 2018년 예산에 ‘공용 차량(2대) 교체 및 매각 처분(928만원)’이 명확히 예정되어 불용품매각대금에 대한 세입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세외수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3) 미수납액

- 징수결정 후 미수납된 세입예산은 변상금 320만원, 지난연도수입²⁾ 351만원으로 총 671만원임(표-3).
 - 첫째, ‘변상금’은 제9대 시의원 보급 전산기기 미반납 및 분실에 따른 것으로 1,540만원(47건)을 부과해 1,220만원(37건)을 징수하고 320만원(10건)이 미수납되었음.
 - 의회사무처는 시의원에게 지급된 물품 관리와 반납에 철저를 기했어야 하나, 제8대 의회 임기종료 후와 동일한 사유로 반복적으로 미수납이 발생했음.
 -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용물품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있어야 할 것이며,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된 미수납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세입징수를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 둘째, ‘지난연도수입’은 2018회계연도에 처음 발생한 항목으로, 2017년까지 의회사무처(비징수관부서)의 미수납액은 재무국(세무과)에서 일괄해 체납 관리를 했으나 2018년부터 소관부서에서 체납 관리를 하는 것으로 결산기준이 변경³⁾됨에 따라, 총 412만원을 징수결정해 61만원을 수납하고 351만원의 미수납이 발생한 것임(표-5).
 - 이 중 2004년, 2006년, 2007년도에 발생한 3건의 미수납금은 「지방세기본법」 제39조⁴⁾에 따른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통상 5년)가 이미 경과한바, 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봤을 때 ‘불납결손’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를 조속히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지난연도 수입 수납 및 체납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2) 지난연도수입이란 전년도 이전에 부과·미수납하여 현년도 세입으로 이월한 것을 말함.

3) 세무과-18077(2016.8.17.), 행정1부시장 방침 제236호

4) 제39조(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하 "지방세징수권"이라 한다)는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時效)로 인하여 소멸**한다. 이 경우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세징수권의 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을 따른다.

<표-5> 2018회계연도 임시적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수입’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세목명	항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과세일자	수납일자
기타변상금	노트북 미반납	310	-	310	2014.8.4	-
	노트북, 갤럭시탭 미반납	560	-	560	2014.8.4	-
	노트북, 갤럭시탭 미반납	560	-	560	2014.8.4	-
	노트북 미반납	310	-	310	2014.8.4	-
	노트북, 갤럭시탭 미반납	365	365	-	2015.7.6	2018.3.20
	노트북, 갤럭시탭 미반납	250	250	-	2015.7.6	2018.3.9
기타이자수입	공금통장이자	27	-	27	2007.8.29	-
기타잡수입	노트북 분실	575	-	575	2006.11.20	-
위약금및지체상금	계약해지 보증금 반환	1,166	-	1,166	2004.6.9	-
합 계	-	4,123	615	3,508		-

2 세출 결산 검토

1) 총괄 검토

-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합해 당초 예산액보다 2억 5,280만원 증액된 272억 5,877만원으로, 이 중 254억 4,119만원이 지출됐고, 1,491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됐으며, 18억 267만원이 불용 처리됐음.
- 최근 3년간 세출결산액 추이는 아래의 <표-6>과 같으며, 2018년도 불용률은 전년대비 2.8% 포인트 감소(9.4% → 6.6%)했음.
- 그러나 서울시(일반회계) 평균 불용률⁵⁾과 비교해 보면, 의회사무처의 불용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불용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함께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됨.

<표-6> 최근 3년간 세출결산 추이

(단위: 만원, %)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용·전용		예산현액	이월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서울시 평균불용율
			감	증					
2018	2,700,597	25,280	15,480	15,480	2,725,877	1,491	2,544,119	180,267 (6.6)	2.1
2017	2,518,446	1,747	390	390	2,520,194	25,280	2,257,034	237,879 (9.4)	2.3
2016	2,233,549	-	2,902	2,902	2,233,549	1,747	2,122,218	109,584 (4.9)	1.7

5) 출처 : 2016, 2017, 2018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서

2) 전용

- 시의회사무처는 2018년 총 2건, 1억 5,48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제10대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부족분(780만원)과 시의원 정원 증가에 따른 의원연구실 증설 및 사무공간 재배치 등에 따른 건축물 구조보강(1억 4,700만원)을 위해 사용되었음(표-7).

<표-7> 2018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계			9,353,398	154,796	154,796		
의정담당관	의정활동수행비	의정활동비	1,908,000	7,796	-	2018-07-20	○ 제10대 중증장애의원 활동보조인력 채용
	의정활동수행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7,796		
의정담당관	의정활동수행비	월정수당	4,852,680	147,000	-	2018-05-28	○ 시의원 정원증가에 따른 의원연구실 증설 및 사무공간 재배치에 따른 건축물 구조보강
	의회청사시설개선	시설비	2,592,718	-	147,000		

- 첫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제10대 의원으로 당선된 중증장애의원(1명)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 시까지 기간제근로자를 우선 채용해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면서 발생한 보수액을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편성 당시 중증장애의원의 수를 명확하게 예측할 수 없었다는 점에서 예산 전용의 불가피함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둘째, ‘시설비’는 2018년 예산안 심의 당시 시의원 정수 증가(106명 →110명)에 따른 관련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도록 의회에서 제안했으나 예산안 심의·의결 시점이 지난 2018년 3월에 그 정수가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예산 전용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운용의 탄력성과 융통성을 부여하기 위해 예산의 전용이 가능하더라도 예산의 편성단계에서부터 충분히 그 예측이 가능한 예산을 집행단계에서 과도하게 전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임.
- 한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5조의2⁶⁾ 및 제55조의3⁷⁾에 따르면,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의 건으로 하여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례 위반에 해당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임.

3) 변경

- 예산 변경은 2,164만원(3건)으로, 지방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및 기초 연구 학술용역 신규 추진(1,650만원), 서울시의회 대표단 초청 증가에 따른 수행직원 국외여비 부족분(216만원),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국외연수 추진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 부족분(298만원)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으로 사용했음(표-8).
- 원칙적으로 예산은 사업 계획과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예측해 편성해야 하고 계획적으로 집행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업내용을 임의로 변경해 집행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므로 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또한 집행부의 재량에 따라 예산 변경을 남용할 경우에는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의회 승인이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적극

6) 제55조의2(예산안 및 예산집행상황의 제출 등) ① 시장 및 교육감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교육감은 세입예산의 징수현황 및 사업별 세출예산의 집행상황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교육감은 예산 전용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분기별로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제55조의3(조례상 보고 등) 시장 및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에서 의회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에 대해 보고의 건으로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시기가 폐회 중일 때는 의장과 상임위원장에게 우선 보고한 후 다음 회기 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보고한다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예산의 변경 사용은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불용이 확실시 되는 경우에 실시함이 원칙이고, 특히 의회비(205)는 시의원의 의정비 등을 차질 없이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법정 경비라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예산을 임의로 변경 사용하는 것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음.

<표-8> 2018회계연도 예산 변경 현황

(단위 : 천원)

부서명	세부사업	통계목	예산액	변경금액		승인일자	사유
				감액	증액		
계			1,442,486	21,637	21,637		
의정 담당관	의정활동수행비	의원역량개발비	142,000	16,500	-	2018-10-24	○ 지방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조사분석 및 기초연구 학술 용역 추진을 위한 변경
	의정활동수행비	연구용역비		-	16,500		
의정 담당관	해외자매도시교류 및 국제회의참석	의원국외여비	470,243	2,158	-	2018-10-16	○ 서울시의회 대표단 초청 증가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 변경
	해외자매도시교류 및 국제회의참석	국외업무여비	180,000	-	2,158		
의정 담당관	해외자매도시교류 및 국제회의참석	의원국외여비	468,085	2,979	-	2018-12-17	○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 협의회 국외연수 추진에 따른 수행직원 여비 변경
	해외자매도시교류 및 국제회의참석	국외업무여비	182,158	-	2,979		

4) 이월

- 사고이월은 총 1건, 1,491만원으로 의회입법정책연구용역 총 32건 중 1건⁸⁾이 과업지시서 불이행 등 수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해 2018회계연도 종료일 이전까지 용역 성과품을 제출하기 어려워 사고이월한 것임(표-9).

8)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체계 개선방안」(계약업체 : 디자인오아시스, 계약금액 2,890만 7,280원)

<표-9> 2018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이월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집행잔액
사고 이월	의회입법정책연구구용역	966,500	923,740	14,907	27,853
	201-01 사무관리비	33,700	32,962	-	738
	207-01 연구용역비	932,800	890,778	14,907	27,115

- 해당 연구용역의 당초 계약기간은 2018년 7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3개월 이었고, 착수보고회 개최 후 완료일까지 중간·최종보고회 미개최 등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해 수행업체에 지체상금⁹⁾ 부과 안내(2018.10.26./입법담당관-2753)를 통지한 바 있음.
- 그러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 이미 계약위반 사항이 발생했고 별도의 기간 연장이 없었다는 점에서 계약기간 만료 다음일에 계약을 해지했거나, 회계연도말을 기준으로 지체상금과 기 지급된 선급금을 회수했어야 함에도 이를 사고이월한 것은 부적정한 조치라 볼 수 있을 것임.
- 사고이월은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 사항으로서, 불가항력적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면 집행부 임의로 활용돼선 안 될 것임.
- 한편, 향후 우수 연구기관의 참여를 유인하고 질 높은 연구결과 도출 등 연구용역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연구용역 계약업체 선정 및 관리·운영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9)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금액의 1.3/1000

5) 과다불용 사업

- 예산의 과도한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므로 사업의 단계에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중 불용률이 20%를 넘는 사업과 불용사유는 <표-10>과 같으며, 낙찰차액 등을 제외한 대부분이 예산편성과정에서 면밀한 사전검토가 미흡했기 때문이라 볼 수 있음.

<표-10> 2018회계연도 20% 이상 불용액 발생 현황 및 불용사유

(단위: 천원, %)

예산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불용사유
유공시민표창및시상	116,360	34,062 (29.3)	○ 그간 유공시민 표창 수여 후 시민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나,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 논란이 제기되어 10대 의회 개원 이후 시민소통 간담회 폐지에 따른 예산 미사용
의회안내홍보책자제작	88,400	22,104 (25.0)	○ 브로슈어 예산액과 시장조사 결과에 따른 발주액과의 차이 및 낙찰차액 ○ 홍보책자 우편발송비 집행사유 미발생
국외자매도시의회대표단초청	76,790	17,502 (22.8)	○ 초청 도시 4개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격년(14년, 16년 서울시의회 방문)으로 초청중인 울란바타르 시의회의 방문이 19년으로 연기되어 예산 미사용
해외자매도시교류및국제회의참석	699,223	150,651 (21.5)	○ 2018년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상임위 비교시찰 참가 저조 - 제9대의원 106명 중 38명 비교시찰 불참 ○ 비교시찰 예산 편성 대비 실제 집행 저조 - 비교시찰 의원 1인당 지원액을 3,200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실제 의원 1인당 평균 2,893천원 집행
국내의정활동교류	245,340	112,835 (46.0)	○ 2018년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해 의원 공무출장 및 국내 교류 활동이 저조하여 집행 잔액 발생
정책연구위원회운영강화	84,360	25,484 (30.2)	○ 상반기 지방선거로 인한 운영 축소 - 상반기(9대 의회) 회의개최 회수 축소에 따른 예산 미집행 (수당, 자료집, 현수막 제작 등) - 워크숍 미개최에 따른 예산 미집행
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	94,740	33,003 (34.8)	○ 집행사유(기관쟁송비용) 미발생(전액 미집행) - 전체 예산액 중 기관쟁송비용 30,800천원 계상(30%비중) - 신규쟁송 없음, 기존쟁송(1건) 진행지연(대법원 심리중)
시민과함께하는서울살림토론회등개최	25,600	5,903 (23.1)	○ 지방선거 등으로 결산토론회가 개최되지 아니하여 집행 잔액 발생

- 특히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불용률 22.8%)과 ‘국내 의정활동 교류’(불용률 46.0%),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 사업(불용률 23.1%)은 전년도¹⁰⁾에 이어 2018년에도 과다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예산불용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해 동일한 불용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편성과 집행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할 것임.

6) 주요 사업별 검토

가. 의회비

- 의회비는 의원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10가지 경비로 유형화해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2018년 예산 총 92억 6,306만 4,000원 중 86억 663만 5,000원을 집행했음(집행률 92.9%).
- 먼저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장협의체분담금, 의원국민건강부담금, 의정 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90%가 넘는 양호한 예산 집행률을 보였음(표-11).¹¹⁾
- 그러나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위탁교육비와 강사료로 쓰이는 의원역량개발비,¹²⁾ 의원 공무 출장 시 지급되는 의원국외여비·국내여비는 각각 사업예산의 64.7%, 70.2%, 41.4%밖에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표-11).

10) 2017회계연도 불용률 :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80.8%, 국내 의정활동 교류 69.9%,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 24%

11) 의원국민연금부담금의 경우 지방선거 출마 등으로 인해 제9대 의원의 일부가 중도 퇴사하고, 당초 제10대 의회 개원을 앞두고 의원 전원(2018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 106명)에 대한 국민연금부담금을 편성했으나 실제 국민연금 가입 대상자가 89명으로 확정됨에 따라 26.41%의 불용률이 발생했음.

12) 의원역량개발비 : 그동안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편성했던 의원위탁교육관련 경비를 의원의 전문성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2018년부터 별도의 편성목으로 신설됨.

<표-11> 2018년 의회비 10가지 유형 경비 예산 집행 내역

(단위: 천원, %)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불용률
총계	9,263,064	8,606,635	666,430	92.9	7.1
의정활동비	1,900,204	1,786,773	113,431	94.0	6.0
월정수당	4,705,680	4,544,420	161,260	96.6	3.4
의정운영공통경비	963,920	947,376	16,544	98.3	1.7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15,200	404,776	10,424	97.5	2.5
의원역량개발비	125,500	81,150	44,350	64.7	35.3
의장협의체부담금	149,844	149,844	0	100.0	0.0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91,590	140,984	50,606	73.6	26.4
의원국민건강부담금	158,220	146,926	11,294	92.9	7.1
의원국외여비	465,106	326,556	138,550	70.2	29.8
의원국내여비	187,800	77,830	109,970	41.4	58.6

- 의원역량개발비의 경우 2018년 하반기 장기위탁교육과정 중 일부(서울시립대학교 ‘지방자치 리더십 과정’)가 최소운영인원 미충족과 위탁교육기관의 관련 내부 규정 미비 등으로 인해 무산되면서 해당 교육과정 수업료(3,000천원×15명=45,000천원)가 전액 미집행됐다는 점에서 예산편성당시부터 체계적인 사업계획 수립이 미흡했다고 볼 수 있을 것임(표-12).

<표-12> 2018년 하반기 장기위탁교육과정 개요

교육기관	과정명	기간	수업료	선발인원	비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지방의정 리더십 과정	2018.9.~2019.2. (6개월)	1명당 3,500천원	22명	교육 실시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지방자치 리더십 과정		1명당 3,000천원	15명	교육 무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4년 단위의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과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므로 관련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체계적인 의원 역량 개발에 힘써야 할 것임.

- 의원국외여비는 해당도시의 정치사정 등을 고려해 방문하지 않았고 의원국내 여비는 지방선거 준비로 인해 국내 교류활동이 저조해 높은 불용액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이는 예산 편성 당시에도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사유로서 정확한 사업 목표와 분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평가할 수 있음.
- 선거와 같이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반복해 발생하는 상황들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므로 누적된 예산 집행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됨.

나.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은 의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에 공헌한 시민과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표창을 수여함으로써 공적을 치하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는 사업임.
 - 2018년 사업 예산은 표창장과 상장 제작을 위한 사무관리비 6,300만원과 수상자들과의 시민소통 간담회 개최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36만원으로 구성됨.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소통 간담회가 처음 도입된 2016년 불용률은 12.5%를 나타냈고 2017년에는 0.1%로 크게 낮아졌으나, 2018년 시민소통 간담회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이 제기되면서 이를 개최하지 않아 29.3%의 높은 불용률이 발생했음(표-13).
- 2018년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개최된 해로 공정한 선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시기인 만큼 시민소통 간담회 같은 사업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편성 단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었음.

- 향후 사업계획 작성과 예산 편성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그것을 근거로 시민소통 간담회 개최 여부를 판단해 과도한 불용액 발생을 방지해야 할 것임.

<표-13> 최근 3년간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분	통계목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8	사무관리비	63,000	62,988	12	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360	11,512	33,848	74.6
	포상금	8,000	7,798	202	2.5
	합 계	116,360	82,298	34,062	29.3
2017	사무관리비	108,000	107,993	7	0.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5,360	45,360	0	0.0
	포상금	4,800	4,599	201	4.19
	합 계	158,160	157,952	208	0.13
2016	사무관리비	54,000	53,999	1	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0,400	36,870	13,530	26.9
	포상금	4,800	4,680	120	2.5
	합 계	109,200	95,549	13,651	12.5

다.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과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 시의회 소식지 발행은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고하고자 의회의 주요 정책·의정 이슈, 조례 입안·제정, 의원 의정활동 등의 소식을 간행물 형태로 발행하는 사업임.
- 2018년에는 당초 목표인 연 6회 발행, 27만부 제작을 100% 달성하였으나, 시의회 소식지 계약절차 상의 낙찰차액 발생으로 예산 불용률은 전년도에 비해 17.2%포인트 증가한 19.1% 수준을 기록했음(표-14).

- 「서울의회」 활자책 발행업체는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거 선정되는데, 당초 발주금액 5억 6,252만원보다 1억 720만원 적은 4억 5,530만원에 낙찰돼 집행잔액의 62.1%를 차지하였음(녹음도서와 점자책 낙찰차액은 각각 160만원과 15만원임).

<표-14> 최근 3년간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예산 현황 및 운영 실적

(단위: 천원, %)

구 분	목표대비 성과			예 산			
	목표	실적	달성율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8	6회/27만부	6회/27만부	100	906,066	733,383	172,683	19.1
2017	6회/25.5만부	6회/25.5만부	100	852,612	836,156	16,456	1.9
2016	6회/24만부	6회/24만부	100	879,635	783,771	95,864	10.9

-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은 서울시의회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기 위해 의회 방문하는 청소년과 내·외빈, 국제교류활동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의회 활동을 소개하는 홍보 만화, 홍보 브로슈어를 제작·배부하는 사업임.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2017년 평균 30.4%의 높은 불용률을 보였고, 2018년 역시 의회소식지 예산액과 시장조사 결과에 따른 발주액과의 차이 및 낙찰차액으로 인해 25.0%의 높은 불용률이 발생했음(표-15).
 - 브로슈어 예산을 6,440만원으로 편성했으나 시장조사 및 계약심사 결과 적정 발주금액을 5,022만원으로 책정해 1,418만원의 차액이 발생했고 브로슈어 발주 금액과 계약금액(4,519만원) 사이에도 503만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등 총 1,921만원의 낙찰차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86.9%를 차지했음.

<표-15> 최근 3년간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8	88,400	66,296	22,104	25.0
2017	20,000	9,296	10,704	53.5
2016	81,561	75,607	5,953	7.3

- 예산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단계부터 의회소식지와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비용에 대해 면밀한 시장가격 조사가 선행돼야 함에도 연례 답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오류를 범한바, 향후 합리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는 책자 제작비용에 대한 철저한 사전 시장조사를 근거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도한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거나 확정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사업비를 감액함으로써 예산 집행과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라.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 시의회 정례회와 임시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영상물로 제작하여 교통방송 (tbs)과 지역케이블 방송사에 송출하고 다중 이용시설 및 지하철 PDP 등에 방영함으로써 의회활동을 홍보하며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관심과 신뢰를 얻기 위한 사업임.
- 최근 3년간 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불용률이 2016년 11.1%, 2017년 20.0%를 보인바, 이는 예상 의회 회기 6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후 5 회의 회기에 대해서만 영상물을 제작한데 있음(표-16).

<표-16>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8	357,780	301,867	55,913	15.6
2017	299,800	248,918	50,882	20.0
2016	228,000	202,647	25,353	11.1

- 2018년은 시의회가 새롭게 구성된 만큼 회기 수가 유동적일 가능성에 대비해 6회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도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으나, 과도한 예산 불용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집행을 저해하는 만큼 향후에는 적극적인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통해 회기 유동성에 의한 불용예산을 줄여야 할 것임.

마.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 해외 자매도시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의회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선진도시의 우수 사례를 시와 의회 정책에 도입하고자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과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사업을 운영 중임.
- 2018년도 사업 예산 불용률은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이 22.79%,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이 21.55%로 두 사업 모두 20%가 넘는 높은 불용 수준을 보였음(표-17).

<표-17> 2018년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예산 집행 상황

(단위: 천원, %)

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불용률)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76,790	59,288	17,502(22.8)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699,223	548,572	150,651(21.6)

- 특히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의 경우 2016년(36.0%)과 2017년(80.8%) 심각한 불용 상태를 보여 예산을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다 불용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음(표-18).

<표-18> 최근 3년간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18	76,790	59,288	17,502	22.8
2017	194,790	37,338	157,452	80.8
2016	197,100	126,059	71,041	36.0

- 또한 예산 불용의 주요 사유로 해당 자매도시의 정치 사정(선거 등) 등을 설명하고 있지만 성과계획 대비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은 125%,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은 130%의 초과 실적을 달성한바, 이는 당초 성과계획을 과소 설정했거나 예산을 과다 책정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함(표-19).

<표-19> 2018년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과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성과계획 대비 추진실적

사업명	성과계획	추진실적 (달성률)
국외 자매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4회	5회 (125%)
해외 자매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10회	13회 (130%)

- 해당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의 다양한 도시와의 교류확장과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국제교류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동시에, 다음 연도 초청·방문 대상 도시의 사정을 사전에 파악해 예산에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함.

바. 국내 의정활동 교류,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 국내 의정활동 교류는 전국 시·도의회 간 상호 교류 활동과 의원 세미나 지원 등을 통해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의회 방문인에게 기념품을 제공해 홍보 효과를 향상하는 사업으로 2016년 28.1%, 2017년 69.9%에 이어 2018년에도 46%의 불용률을 보였음.
-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는 시의원과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책연구위원회 (현 정책위원회) 연구발표회·워크숍·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시 핵심 사업에 대해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일하는 정책의회상을 정립하고자 운영 중인 사업으로 2017년 18.3%, 2018년 30.2%의 과다 불용률을 보였음.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는 시민·전문가·시민단체 등이 함께 참여하는 예·결산 토론회를 정례적으로 개최함으로써 다양한 의견을 예·결산 심의 과정에 반영해 투명한 재정 운영에 기여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7년 24%, 2018년 23.1%라는 높은 불용 수준을 보였음.
- 특히 국내 의정활동 교류와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의 경우 지방선거 실시로 예산 집행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돼 2018년 예산을 상당부분 감액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예산 집행율을 보였음(표-20).

<표-20> 2018년 국내 의정활동 교류,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예산 편성 상황

(단위: 천원, %)

사업명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예산 증·감 (비율)	감액 사유
국내 의정활동 교류	414,540	245,340	△169,200 (△40.8)	2018년 지방선거 실시로 인한 집행 저조 예상 및 그간 집행 실적 감안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100,940	84,360	△16,580 (△16.4)	2018년 지방선거 실시로 인한 연구발표회 개최 횟수 감소

- 또한 지방선거의 여파로 소극적인 사업 추진이 될 것을 염려해 2018년 예산을 감액했다는 두 사업의 2018년 성과계획이 2017년과 동일하다는 점과, 이후 지방선거 실시로 인해 각종 국내 의정활동 교류와 정책연구위원회 회의·워크숍을 축소하거나 미개최했음에도 100% 성과 달성률을 보였다는 점은 사업 목표·계획과 예산과의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전년도 성과 계획을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표-21).

<표-21> 2017-2018년 국내 의정활동 교류, 정책연구위원회 운영강화 성과계획 대비 추진 실적

사업명 (주요 사업)	2017년		2018년	
	예산 편성 당시 성과계획	추진 성과 (달성률)	예산 편성 당시 성과계획	추진 성과 (달성률)
국내 의정활동 교류	20회	20회 (100%)	20회	20회 (100%)
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위원회 운영, 연구활동 지원)	15회	16회 (106.7%)	15회	15회 (100%)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의 경우 지방선거로 인해 결산토론회를 개최할 수 없었다고 밝힌 것과 달리, 2018년 예산 편성 당시 이미 예·결산 토론회 개최를 1회로 성과 계획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정확한 사업 계획 없이 연례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온 것으로 판단됨(표-22).

<표-22> 2018년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성과계획 대비 추진 실적

사업명 (주요 사업)	2018년 예산 편성 당시 성과계획	추진 성과 (달성률)	사업 예산 과다 불용 사유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예·결산 토론회 개최)	1회	1회 (100%)	지방선거 등으로 결산토론회 미개최

- 아울러 세 사업 모두 2018년 6월에 실시된 지방선거에 영향을 받아 상반기에 계획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면 이후 7월에 있었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때 적극적인 예산 감액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었으나 이를 그대로 불용해 예산 관리에 미흡함을 보였음.
- 연례적으로 성과계획을 수립하고 반복적으로 예산을 과다 불용한 세 사업의 결산 현황을 다음연도 예산 심의 시 반영해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취지를 살리고 예산 운용의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임.